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지 방 교 육 자 치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은 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시, 단체장이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청구요건을 심의하는 절차가 생략되고,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됨.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시·도교육감이 주민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청구요건을 심의하는 절차를 삭제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의 조례 제·개정·폐지 청구 시,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폐지(안 제2조 제2항 제3호 삭제)

1)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이 교육감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경우,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상 교육감 소속의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청구요건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법령 간 충돌이 발생함. 이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삭제함.

현행	개정안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2. (생략) 3. <u>주민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u> 4·5. (생략) ③ ~ ⑧ (생략)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② ----- -----. 1·2. (현행과 같음) <u><삭제></u> 4·5.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심사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3호 “주민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u>주민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u>	<u><삭제></u>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	
연락처	044-203-7074